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3149
----------	------

제출연월일 : 2025. 8. 8.

제출자 : 하남시장

1. 위탁사무명: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 「식품 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제10조(재정적 지원)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7조(의회 등의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13조(재계약), 제21조(성과평가)

○ 추진 필요성

- 2025. 12. 31. 하남시푸드뱅크 위·수탁기간 만료 예정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민간 기부자원 발굴부터 긴급위기가구 연계까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기부자 관리 및 기부식품등 물품 모집·보관·배분 등 전문적 경험이 있는 기관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 및 재계약 추진 필요

3. 위탁사무 내용

○ 하남시푸드뱅크 운영

- 하남시푸드뱅크 본점·분점(미사, 감일) 시설 운영 및 관리
- 기부식품등의 모집·관리 및 제공
- 기부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
- 그 밖의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부수 사업(푸드코디네이터 배치, 이동푸드마켓 운영 등)

4. 위탁시설 개요

○ 하남시푸드뱅크 본점 및 분점 현황

(2025. 7. 31. 기준)

시설구분	본 점					미사분점				감일분점					
소재지	역말로 71, 덕풍스포츠 문화센터 1층(덕풍동)					미사강변한강로220번길 43(망월동)				신우실로63번길 15, B동 101~102호(감일동)					
개소일	2011. 1. 1.					2019. 4. 26.				2023. 3. 9.					
규모	116평(385.69㎡)					25평(84㎡)				20평(66.55㎡)					
인력현황 (40)	계	전담직원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봉사자	계	전담직원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계	전담직원	사회복무요원	일자리사업		
	23	3	5	9	6	10	2	6	2	7	2	3	2		
이용인원 (월2회)	월평균	1,728가구				월평균	1,903가구				월평균	611가구			
	일평균	87가구				일평균	96가구				일평균	31가구			
2024년 연이용자	합계	총 46,639가구(이동푸드마켓 포함)													
		19,243가구 (이동푸드 1,234가구)					19,371가구				6,791가구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2026. 1. 1. ~ 2028. 12. 31.(3년)

※ 위탁기간 근거: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8조제3항 (위탁기간 3년 이내)

6. 수탁자 선정방식: 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하남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점복)’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추진
- 민간위탁(재계약)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및 공개모집 절차 이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554,644천원(도비 40,338, 시비 514,306) ※ 2025년 2회 추경 기준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계	554,644		
푸드뱅크 운영	384,194	- 인건비(4명) 176,412천원 - 운영비 194,382천원 - 업무추진비 5,400천원 - 사업비 8,000천원	시비 100%
푸드코디네이터 사업	98,498	- 인건비(2명) 98,498천원	도비 30%, 시비 70% 시비추가(28,498천원)
이동푸드마켓 운영	66,252	- 인건비(1명) 50,640천원 - 운영비 15,612천원	도비 30%, 시비 70% 시비추가(21,252천원)
푸드뱅크 홍보비	1,500	- 홍보비 1,500천원	도비 30%, 시비 70%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0	- 종사자 7명(월 50,000원)	도비 100%

- 3개년 예산계획: 1,719,212천원

- 산출근거 (단위: 천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562,911	572,970	583,331
푸드뱅크 운영	389,487	394,937	400,552
푸드코디네이터 사업	101,453	104,497	107,631
이동푸드마켓 운영	67,771	69,336	70,948
종사자 처우개선비	4,200	4,200	4,200

※ 산출근거: 인건비 매년 3%(예상) 상승분 반영 및 인건비 외 동결(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인건비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용)

8.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부식품 관리·배분 등에 대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위탁 운영 방식이 적합
- 사업의 연속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우선 검토 필요

9. 성과평가 결과

-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21조(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성과평가 실시
 - (평가일시) 2025. 7. 29.(화) /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
 - (평가위원) 4명 /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팀장, 희망복지팀장, 경기광역푸드뱅크센터장
 - (평가결과) 99점(가점 3점 포함) ※ 100점 만점(가점 3 / 감점 -10점)
- 2024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평가
 - (평가대상 기간) 2021년 ~ 2023년(3년주기 평가 실시)
 - (평가주체) 보건복지부
 - (평가결과) 101.97점(경기도 내 1위 / 80개소) ※ 100점 만점(가점 5 / 감점 -18점)
- 평가 결과,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는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됨

10. 향후계획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2025. 9월 중
- (재)계약 체결: 2025. 10월 중

11. 관련 법령 및 조례: 불임1

관련 법령 및 조례

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식품등의 일부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2 하남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개정 2023.5.1.>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7조(의회 동의 등)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5.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개정 2023.5.1.>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개정 2023.5.1.>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개정 2023.5.1.>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12.>

제13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3.5.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1.12., 개정 2023.5.1.>